



기술표준원공고 제 2006 - 73호

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 고시 개정(안) 입안예고

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제11조(안전검사의 기준)의 규정에 의하여 “킵보드,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, 비비탄총 및 크레용·크레파스의 안전검사기준”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5년 4월 4일

기술표준원장

※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(www.ats.go.kr)로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➔ 담당자 :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준과 공업연구관 임현진 ((02-509-7247)